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06-01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금녀(상명대학교 교수)
연구원	이영주(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연구원	김언경(방송독립포럼 사무국장)
연구원	백수정(서울 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팀장)
보조연구원	박성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
장애우방송모니터단	강민산, 심승보, 이영희, 이태석, 이현아

목 차

01. 장애 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이란? _ 8

02. 장애 언론 제작의 사전·취재·인터뷰 가이드라인

1. 장애인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하기12
2. 장애인의 언론 접근성 제고와 적절한 제작 환경
만들기13
3. 장애인을 취재(또는 출연)할 때
일반적 가이드라인15
4. 장애인이 출연할 때 진행과 인터뷰 가이드라인 ..17
5. 장애 유형별 상세한 취재 가이드라인20
6. 장애인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22
7. 기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관련 주의사항 ..23

목차

03.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 1.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30
- 2. 장애인의 인권 존중하기51
- 3.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65

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 01 방송물 접근78
- 02 내용물 규제81
- 03 물리적 접근83
- 04 정보·환경접근86

부록. 인권보도준칙 _ 93

장애 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

01. 장애 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이란?

장애인 하면 휠체어와 목발, 보조견에 의지해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또는 바닷길을 기어 다니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모습 등이 상정처럼 떠오른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들은 장애인이 고통스럽고 독립적이지 못하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이미지들은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적인 시선을 강요하고 수용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결격사유’, ‘장애인=열등하고 사회생활에 결함이 있는 존재’라는 차별적 시선을 갖게 한다. 문제는 언론이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의 고정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다. 분명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인식이지만, 오랜 시간 굳어진 편견의 골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반화되어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졌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삶에서 장애인을 직접 만나고 부딪치면서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한 축적된 이미지일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은 소문이나 인상에 의한 것일까? 물론 특별한 자신만의 경험에 의해 생긴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식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정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축

적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안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회와 사회적 장치들이 너무나 미흡해서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험의 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나 경험을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고 대중매체에 비춰진 그들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는 그동안 장애인을 어떻게 그려왔을까? 아쉽게도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등 비장애인 중심에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대중매체의 장애인 재현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 재생산했다.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장애인은 현실과 다르기도 하고, 장애인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민감하게 숙고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기는커녕 비장애인의 선행만을 부각하거나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 제작자들도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고의적으로 잘못된 장애인 인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제작자들이 앞으로도 무엇이 문제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둔감한 인권 감수성으로 장애인 이미지를 생산한다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제도적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 제작자들과 종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그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애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보다 바람직한 태도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은 『2008 장애인권방송지표 가이드북』(김금

너, 김철환, 박웅진, 이영주, 백수정 공저)’을 토대로 해서, 보다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 제작진들이 장애인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통해,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또한 언론제작자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제작자들 내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궁극적으로 언론인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반화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변화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의 구성은, 방송이나 언론이 장애인의 이미지를 재현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이에 대한 언론제작가이드라인의 연구개요와 제작 시 사전 고려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사나 방송내용에서 장애인 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영상표현, 장애인 캐릭터연출, 인터뷰 시 고려 사항), 방송이나 언론 현장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 조항들도 실었다.

장애 언론 제작의 사전·취재·인터뷰 가이드라인

02. 장애 언론 제작의 사전·취재·인터뷰 가이드라인

1. 장애인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하기 (사전 체크리스트)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들어가기 전 프로그램 제작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토론해야 한다.

- 1)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장애인과 관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서로 토론해야 한다.
-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장애인과 관련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제작하려는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는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토론해야 한다.
- 3)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출연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상황 연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장애인의 인격이나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것인지 서로 토론해야 한다.
- 4)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장애인의 출연이나 관련 상황들이 기획의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토론해야 한다.
- 5)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극중 장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잘

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작가, 연출자 및 배우들이 일정기간 장애인과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 6)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제작 전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청자 단체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 (1) 프로그램의 기획과 편성에 있어서 의도하는 내용이 적절한지 장애인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2) 경우에 따라 장애인이 기획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7) 극중 장애인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직업 등이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혹은 과도하거나 제한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토론해야 한다.
- 8)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장면에서 출연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출연자들과 조화롭게 역할의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토론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언론 접근성 제고와 적절한 제작 환경 만들기 [사전 체크리스트]

- 1)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장애인의 출연이나 제작 참여 등에 필요한 방송국내의 물리적인 접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1)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경사로를 구비해야 하며, 단층이 아닌 경우 승강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스튜디오의 문턱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만들어야 한다.
 - (3)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구비해야 한다.
 - (4) 대중교통의 이용이나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차를 가지고 방송 제작 현장에

을 경우 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5) 시각장애인이 동반하고 온 보조인이나 안내견이 대기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은 장애인 출연자나 제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1)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점자유도 블록이나 음성안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2)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수화나 지적장애이용 그림카드, 쉬운 대본 등을 제공해야 한다.
 - (3)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4)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의 동반 여부를 물어야 하고 동반하지 못할 경우 수화통역사 대기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3) 제작 후 방송 상황을 미리 고려한 후 장애인들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화, 수화 중계, 자막, 화면해설 서비스의 포함 여부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 4) 장애가 있는 배우나 스태프를 위해 활동보조인의 도움과 같은 적절한 제작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1) 각각의 장애 유형에 따른 필요사항들을 체크하고 의견을 수렴해 세트장을 설치해야 한다. 야외 촬영의 경우에는 장소에 따라 동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경사로나 활동보조인 등을 지원해야 한다.
 - (2)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제작현장에 함께 하며, 낮은 환경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지적장애인이거나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쉽고 단순하게

질문하고 반복하여 확인하는 등 본인의 역할을 인지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 (3) 간질 장애인의 경우 발작이 일어나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겨주며 넥타이,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장애인과 관련된 제작 환경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계획해야 한다.
 - (1)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비용을 프로그램 제작의 예산항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2)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홍보와 접근 서비스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3. 장애인을 취재(또는 출연)할 때 일반적 가이드라인

1) 장애인을 취재할 때 필요한 사항 물어보기

장애인은 취재에 응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를 나오게 되는지, 방송국으로 가야 하는지, 수화 등의 지원이 되는지, 이동 시 도움을 주는지 등 장애인 입장에서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섭외할 때에는 취재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하며, 그에 대한 도움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2) 취재할 때 충분히 대화하기

취재할 때 사전에 장애인과 친숙하도록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장애인이 당혹스럽지 않게 취재진의 기다림의 미학이 요청된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 경우, 취재 상황에 친숙해질 때까지 취재진과 장애인 간의 편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다음 취재

하는 것이 장애인의 진실한 의견과 영상을 포착할 수 있다.

3) 카메라 움직임 설명하기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메라 작동과 시작 또는 각도 등을 볼 수 없으므로 공간에 대한 인지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취재할 때 장애인에게 카메라 작동의 시작과 끝, 카메라 각도 등을 반드시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4) 사전에 장애유형을 인식하기

취재할 때 취재 대상의 장애유형에 대한 사전인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뇌 병변장애인의 경우, 움직임이 많은 편이므로 가능한 한 장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가급적 투 샷보다는 싱글 샷을 사용해야 한다.

5) 장애유형에 맞는 취재장비 챙기기

취재 시 장애인의 자연스런 삶의 모습을 영상화하려면 기본취재 장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움직임이 많은 장애인이나 상황에 따라 불안해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취재 시, 카메라를 두 대 이상 사용하여 영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이는 좋은 영상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메시지를 진정성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4. 장애인이 출연할 때 진행과 인터뷰 가이드라인

1) 자연스러운 질문과 인터뷰하기

사회자나 리포터는 장애에 대한 사전인식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진행상의 질문이나 인터뷰 질문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프로그램 흐름이 장애인, 사회자, 리포터, 정보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며,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2) 장애인의 삶과 장애는 장애인 스스로가 하도록 인터뷰하기

출연자를 소개할 때 장애를 먼저 앞세우거나 장애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출연자를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특정집단으로 간주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오히려 장애인이 수행한 능력을 우선시하여 다루면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가 이야기에 중요하지 않다면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체적 한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능력이 솔직담백하고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대화를 한다.

3) 언어사용에 대해 주의하기

‘장애인은 순수하고 의지가 강하다’라든가 ‘장애인을 도와주면 천사다.’라는 식의 사회적 편견이 배어 있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언어사용과 지나친 찬사는 금물이다. 미답이 방송소재가 될 경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천사시네요.”, “세상에~” 등의 불필요한 감탄사를 남발하면서 지나친 찬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동정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한 장애인을 마치 초인처럼 여기고 대화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를 흥미유발, 감동유발을 목적으로 대화를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1) 진행자는 장애인을 개인적인 아픔이나 문제로 접근하는 언어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선천적 장애 혹은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다룰 때 눈물을 짜게 하는 질문을 피한다.

- (2) 진행자는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괴로운’, ‘불구의 몸으로’, ‘고통 받는’, ‘희생자’ 등의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언어보다는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자 ‘함께 이 웃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언어사용이 바람직하다.
- (3) 장애(인)로 ‘불리할 수도 있는’, ‘정신적으로 다른’, ‘육체적으로 불편한’, ‘육체적으로 도전받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등의 용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한쪽으로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이아무개’ 라든가, ‘OOOO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웃의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언어사용이 바람직하다.
- (4) ‘신체는 못 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비참하지만 의연하다.’라는 식의 상투적인 문구를 피한다. 이러한 문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OOO한 꿈을 이루기 밝고 최선을 다한다.’, ‘OOO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OOO한 상황에서도 강인한 정신이 두드러진다.’ 등의 표현이 바람직하다.
- (5) 장애인 가정에는 장애가 또 있을 것이라는 암시나 ‘선천성 장애’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한다.
- (6) 정신장애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전적인 장애라는 사실을 기정 사실화하거나 가족 중에 또 있는지 여부를 묻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장애인 임신부에게 장애아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인터뷰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장애를 진행성 또는 전염성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 즉 장애가 전염될 수 있거나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질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안 된다.
- (8) 내레이션에서 장애인을 ‘그들’로 표현하기 쉬운데, ‘그들’이란 인칭대명사는 장애인을 집단화 시키고 비장애인과는 차별된 집단이라는 느낌을 유발시킬 수 있다.

- (9) 장애나 질환의 명칭을 장애인과 동일시해서 호칭하지 않는다. 예컨대 소아마비들, 뇌성마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10) ‘장애우’라는 용어는 삼가한다.

4) 취재원 인권 보장하기

장애인과 인터뷰 시 몰래카메라의 사용,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등은 반드시 요청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자이크 처리, 음성 변조, 몰래카메라 촬영 기법 등은 주로 비리 혐의, 범죄 추적 등의 고발성 방송에서 해당 취재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 이런 기법이 사용되면, 시청자는 장애에 대해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장애인의 능력을 끌어내는 인터뷰하기

인터뷰나 내레이션 진행도 모두, 장애인 ‘그 사람이 한 일과 능력’에 맞춰야 한다. ‘그 일을 하는데 장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회적 시선에서 질문하여, 장애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내레이션에서는 장애인을 이름, 직업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지체장애인 김씨’가 아니라 ‘요리사 김OO’, ‘자폐아 고 군’이 아니라 ‘학생 고OO’, ‘뇌병변 장애인 이씨’가 아니라 ‘OO사장 이OO’ 등으로 장애를 부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직업 또는 직책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휠체어(보조기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장애인이라는 표현 등과 같은 수동적인 장애인으로 인식시키기 보다는 ‘휠체어 혹은 클러치를 사용한다.’ ‘단가, ‘클러치를 이용하여 걷는다.’, ‘발가락으로 수저를 든다.’ 라는 장애인의 사실적 능력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장애 유형별 상세한 취재 가이드라인

1)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 (1) 현장에 있는 사람을 통하지 말고 장애인들과 직접 대화를 한다.
- (2) 만일 도움을 주고 싶으면 장애인에게 ‘도와줘도 될까요?’라고 반드시 물어본 후, 도움요청을 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요청에 대해 듣거나 응답한다.
- (3) ‘도와줘도 된다.’고 하더라도 신체를 만져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잡아서 도와주어야 하는지 사전에 물어야 한다.
- (4) 모임 또는 계획할 때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2)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 (1) 장애인이 당신을 인지하고 대화 준비가 될 때까지 청각 손상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기다린다.
- (2) 수화 또는 언어 통역사가 있다면 통역사에게 말하기 보다는 만나고 있는 그 장애인에게 직접 말을 건다.
- (3) 청각 장애인에게 말할 때 소리 지르거나 입술의 움직임에 과장되게 하지 마라,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고 입을 가리지 않는다.
- (4) 장애인이 구화를 사용한다면 분명히 밝은 쪽을 향해서 보통 크기의 목소리로 똑바로 보고 말을 건다.
- (5) 언어 손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체적으로 주의한다. 그 장애인을 교정하려 하거나 대신해서 말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말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문장을 중지시키려는 유혹을 자제한다.
- (6)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짧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배려한다. 만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한 척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해한 것을 되풀이 해 말하고 다시 묻는다.

3)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

- (1) 휠체어 사용자와 몇 분 이상 길게 이야기해야 할 경우 장애인이 장시간 동안 쳐다보느라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눈높이를 같게 맞춰야 한다.
- (2) 절대로 장애인의 휠체어에 기대거나 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묻고 나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절대로 휠체어 사용자의 머리 위에서 토닥거리면 안 된다. 아동일 경우 있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다.
- (4) 휠체어 사용자와의 만남을 정할 때 항상 날짜를 통지하기 전에 교통수단을 확보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장애인과 만날 장소를 정할 때 경사로 혹은 턱이 없는 입구, 리프트(필요하다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화장실 편의시설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고 정한다.

4)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

- (1) 점자명함을 마련하여 당신의 신원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소개한다.
- (2) 그들이 방 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 주려고 노력한다.
- (3) 악수를 청할 때 “우리 악수할까요?” 와 같은 말들을 해주어야 한다.
- (4) 생소한 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의 팔을 저에게 맡겨 주세요”라고 말한다. 이는 당장 행동으로 이행하거나 인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내하기 쉽다.
- (5) 계단 앞에 왔을 때 계단이 아래로 향하는지 위로 향하는지 알려준다.
- (6) 좌석을 제공할 때, 그 사람의 손을 의자의 뒷부분이나 팔걸이에 놓아 준다.
- (7)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그룹대화 시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
- (8) 시각장애인이 빈 공간을 향해 말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9) 당신이 대화를 끝내고 싶거나 자리를 떠나려 할 때 말을 해 주어야 한다.

(10) 취재의 계획·활동·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접자로 제공한다.

6. 장애인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 1) 방송사는 장애인을 리포터, 사회자, 배역으로 참여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 2) 방송사는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3) 방송사는 장애인 연기자나 출연자들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 4) 방송사는 매니저들로 하여금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5) 방송사는 오디오션이나 연습을 위한 공간이나 스튜디오를 장애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방송사는 장애인들의 방송 출연이나 제작 참여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 7) 방송사는 장애인 연출자나 스텝의 채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8)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 예산의 편성 시 장애인의 훈련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거나 반영해야 한다.
- 9) 방송사는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나 방송위원회 등을 찾아 장애인을 위한 훈련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7. 기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관련 주의사항

- 1) 언론은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나 폐쇄자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시사나 뉴스, 토론회 같은 사회현상이나 현안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선거토론방송 등은 반드시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본방송시나 모든 방송내용의 접근성은 시청자의 기본권이며, 이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방송법」 제 69조 제8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에 장애인 시청지원에 관한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의 선언적 의미만을 지닌 권고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권고조항으로써 자율적으로 실행할 만큼 높지 않는데다 방송사의 의지도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지상파 3사 외에도, 케이블과 IPTV의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문제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방송3사에서 드라마가 본방송 될 때 화면해설방송과 수화방송이 지원된 적은 없다. 그나마 KBS2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 보기 드물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지원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드라마의 경우, 본방송은 물론 재방송 시에도 매 편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서 내용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토론 프로그램이나 시사 보도프로그램의 경우는 자막이나 수화방송이 지원되고 있으나 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대부분 화면해설방송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간에도 장애유형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결국,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의 차별은 ‘방송 자체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청자

로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인 차별이라는 인식과, 시청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우리 방송의 정서를 고려해 법으로써 지켜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 장애인올림픽 장애인은 보고 듣지 못했다.

‘2010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은 SBS의 단독중계로 방송되었다. 편성 면에서는 과거 장애인올림픽 때보다 9배가 늘어나서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장애인 시청자는 장애인 올림픽을 볼 수 없었다. 장애인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청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우 방송모니터단’의 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개·폐막식은 물론이고, 경기중계 그리고 올림픽하이라이트에서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애우방송모니터단’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 불만 창구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요구를 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심의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통보만 했고 심의안건으로도 상정되지 못하여 해당 방송사는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보를 지금과 같이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 혹은 대상의 사회적 위치나 인식정도에 따라 강제성을 띤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다.

- 2)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나 신문사인 경우, 온라인상에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음성인식서비스나 문자 확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설치 지원해야 하며, 온라인상에서 방송물이나 동영상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이나 수화통역, 자막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접근권’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이다. ‘정보접근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권

리로서 명시하였고, 그 이후, 몇몇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복지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접근권’을 명시하기에 이르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정보접근권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접근권’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서재경, 20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웹 접근성 차별에 대한 집단 진정서)

프랑스 최고 법원에서는 인터넷 접속을 ‘근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장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규칙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이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법’이라고 강조하였다.(서재경, 2010, 웹 접근성 차별에 대한 집단 진정서) 결국, 각국의 이런 움직임의 핵심은, ‘장애인이 남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홈페이지 웹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 웹 접근성에 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3년 이전에, 지상파방송3사 홈페이지부터 시작, 4개의 종합편성채널, 포털사이트 및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까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방송3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차별시정 집단진정

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동일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연대하여 2010년 9월 2일 방송3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차별시정 집단진정을 하였다. 진정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방송 3사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여,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홈페이지는 우선 지나치게 화려한 그래픽에,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 미제공, 키보드만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화면, 웹사이트의 구조 파악 및 메뉴 위치 파악 등의 매뉴얼의 문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청지원의 소홀 등이 지적되었다. 한마디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시정하라는 요구였다. 이는

신문사의 웹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대안의 하나로, KBS는 장애인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장애인 웹사이트에는 없는 경우가 허다해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장애인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집단이라는 기존인식에서 비롯된 차별로 여겨진다. 따라서 큰돈을 들여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는 형식적인 배려보다는 기존 홈페이지에 '알트 텍스트값(Alt text)을 달아주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보편적 접근성의 평등권적인 차원에서나 바람직해 보인다.

- 3)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행사(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 게임 등)나 장애인계 이슈 등은 균등하게 편성, 보도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도 엄연한 보편적 시청권을 가지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방송사의 의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현행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에 주요 행사 등에 관한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히 장애 관련 이슈들에 대한 보도는 '장애인의 날'에만 편중, 전체기사 양 대비 1%도 안 되는 보도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이 무시됨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보 격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사회나 일상에서 장애인의 존재감과 관심을 둔감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장애인올림픽 방송현황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공영방송사인 KBS는 2008년 8월 베이징 장애인 하계올림픽 당시 개막식과 주요경기 하이라이트를 편집하여 낮 시간대인 2시 10분 ~ 3시 33분까지 1시간 23분 정도 녹화방송으로 편성한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한국이 3개의 금메달을 딴 2008년 9월 9일 경기는 녹화중계조차도 없었다. MBC, SBS와 YTN 등 타방송사는 베이징에 중계 팀조차도 파견하지 않았고, 뉴스 팀만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0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한 SBS의 경우, 9.5배가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전에 치러진 비장애인 동계올림픽에 할애된 편성시간에 비교하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김철환 2010 보고서, 참조]

반면,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의 경우는 2008 베이징 장애인 하계올림픽 개막식을 생중계로 방송하였고, 그 외 경기는 하루 6시간이상 녹화형태로 방송했다. 미국의 NBC는 지상파에서 생중계는 안 했지만, NBC의 스포츠 채널인 '유니버설 스포츠'를 통해 생방송을 한 것과는 대조됨을 알 수 있다.[주호영 의원, 국회 국정감사 자료, 2008.]

- 4) 장애인도 언론제작에 참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언론제작 참여에 따른 기회나 환경제공, 언론사 방문 시 접근성에 대한 편의제공은 필수이다.)

언론에서 장애인 인식과 관련한 문제의 1차적 원인인 동시에,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제작 참여는 장애인에 대한 보다 더 현실감 있고 경험에 기반으로 한 참신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장애인이 언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매우 취약하다. 이러한 취약한 인식은 우리나라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식에 있어서도,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들의 경험과 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언론 제작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채용비율인 3%도 지키지 않는 지상파방송사들.

국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에 자료를 의뢰한 결과, 2010년 11월 1일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장애인채용비율이 비정규직 포함, KBS가 2.36%, MBC 1.42%, SBS 0.92%로, 이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채용비율인 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각 방송사의 전체 장애인 직원 중, 기자, 프로듀서 등 프로그램을 제작, 취재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KBS 0.68%, MBC 0.53%, SBS 0.46%로, 각 방송사의 제작단계에서의 장애인 참여비율도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자료제공, 2010.11]

특히 공영방송사인 KBS의 경우, 지상파 방송3사 중 장애인채용이 가장 높은 2.36%로 조사되었지만, 2009년 2.4%(KBS자료 2009)에 비해 0.04%가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직접 제작하고 취재하는 전문직과 관련된 장애인 채용도 2009년 조사 당시 5%에서 현재 0.68%로 현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사인 KBS도 해마다 장애인의 채용비율을 점점 낮추고 있으며, KBS 내부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타방송사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아울러 방송 제작이나 언론제작에의 장애인 참여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등성의 마인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동등성의 마인드는, 장애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는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인권의 차원에서 장애인의 전문성을 키워 나가려는 사회적 의지를 결속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 이런 다양성 존중에 근거한 동등한 관계 형성은 실제로 제작진으로 투입되었을 때에도 장애 특성이나 한사람의 전문성으로 인정하고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03. 영상표현·장애인 캐릭터 연출·언어표현 가이드라인

1. 장애인 또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기

1)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고정관념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다룰 때 ‘사람’이 아닌 ‘장애’를 강조하면 당연히 그가 가진 인간적인 측면들이 사라지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부각된다. 이는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장애인은 ‘나와는 다른 집단’,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 ‘무능력자 혹은 사회적 열등생’, ‘한계적 존재’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그릴 때에는 특별히 장애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면 장애 특성을 부각하는 사진, 텔레비전 화면 구성, 언어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부각시켜 동정심을 일으키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실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사회적 차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제도적인 장치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지나치게 고통스럽고 우울한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또 하나의 편견과 차별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어려운 삶을 그릴 때에도 그의 개인적 비극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고, 되도록 그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해 유독 부정적인 캐릭터로 묘사하는 경우도 문제이다. 장애인도 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캐릭터가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 범죈인, 괴물, 자멸적인 인물, 부적응자, 이상성격자 중 하나 이상의 유형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지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장애인을 이런 사람으로 묘사할 경우 꼭 그해야하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나 프로그램은 ‘의도적인 연출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립니다. 장애인이 출연하면 화면이 칙칙하고, 재미없고 슬픈 내용이며 더 나아가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다는 편견도 버립니다.
- (2) 이야기의 구성방식이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 지나치게 개입된 기법(극화 방식, 재연이나 과거회상)은 거듭 거듭 신중해야 합니다.
- (3) 카메라 시선이나 동선이 장애부위나 장애기구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 (4) 신체 장애부위를 강조하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신체적 불편함을 강조하기 위한 지나친 줌인과 줌 아웃, 신체가 불편하고 거동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하이앵글과 로우 앵글기법 등을 자제합니다.
- (5)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넘어졌을 때, 지나치게 고통스런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 고통을 강조하거나 넘어진 휠체어의 바퀴가 허공에서 오랜 시간 돌아가는 모습을 잡지 않습니다.
- (6) 장애인이 힘들어하는 얼굴, 시각장애인의 눈, 지팡이, 청각장애인의 보청기를 착용한 귀, 수화하는 손 등 개연성 없이 클로즈업이나 롱 테이크 기법으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 (7) 화면 구성 중 불필요하게 화면의 흔들림, 너무 상투적인 장면들, 재연 등으로 장애인의 삶이 불안정하고 불행하다는 식의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

를 초래합니다. 일상인으로서 장애인의 삶을 다채롭게 접근하고 편집에 있어서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 숨겨진 상처와 아픔을 자연스럽게 시각화하는 영상표현이 필요합니다.

- (8) 맥락 없이 지나치게 어두운 조명이나 과잉된 카메라 기법, 슬픈 배경음악 등은 장애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을 암시하는 이미지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 (9) 특히 장애와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휴먼 솔루션 프로그램이나, 성금모금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장애와 가난, 절망적 환경, 불행을 지나치게 강조해 동정심을 유발시키거나, 장애인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로 부각시키는 연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10) 장애인에 대한 관념적인 장면 즉 부정응자, 초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다. △ 배경이 우울한 색과 신비스러운 배경에서 장애인이 서서히 튀어나오는 장면 △ 장애인이 적응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사는 모습 △ 영웅적 결심으로 차별에 맞서 싸운 또는 초인적인 극적장면 △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암울한 분위기 △ 장애인의 의존적인 삶만을 부각하는 등 에 얽히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화면구성의 반복 △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신경질적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카메라 워크 등은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진에서 상투적인 단골메뉴입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장면들이 줄거리의 맥락 상 불필요할 정도로 길게 편집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맥락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11) 장애인의 이미지는 비장애인의 관념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작진이 장애인의 삶의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새롭게 발견된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생산합니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지닌 사람’ 자체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래야 시청자나 독자는 그의 인간적 매력이나 개성을 볼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을 장애 때문에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인물로 과장되게 묘사하지 않습니
다. 물론 장애로 힘겨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
신의 사회적 욕망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희로애락을 더 느낍니다.
- (3)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므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
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이 휠체어에 넘어졌을 경우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스스로 헤쳐 나가는 과정을 믿고 바라
보아야 합니다. 비장애인 관점에서 그의 행동과 감정을 함부로 속단하여 ‘너
무 고통스럽다’거나 ‘불행한 사람이고 안쓰러운 장애인’이라고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유
의지의 표현이므로 장애인의 감정적인 동작표현이나 진실한 표정을 있는 그
대로 영상에 담을 수 있습니다.
- (4) 장애인이 현실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각장
애인이 계속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낙담에 빠지는 불행한 인물로 반복
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좌절하고 실수하
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장애인이 현실생활의 어려움들을 스스
로 극복해 나가는 능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 (5) 장애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감정표현이 언제나 우울한 상태이고, 혹은
조롱당하는 상태로 계속 나온다면 문제입니다. 제작자가 조금만 더 섬세한 시
선으로 장애인을 직접 체험한다면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성격을 소유한 자로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인의 환경과 그의 내면세계를 잘 답을
수 있으며 영상의 리얼리티를 살리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6)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물묘사와 긍정적인 인물묘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물묘사는 △ 의료진에 의존하는 존재 △사회 병리적이며 도움을 받는 존재 △ 특별하고 놀라운 초인적 존재 △ 무능력한 존재이며, 긍정적인 인물묘사는 △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존재 △ 독립적인 존재 △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 △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로써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상호공존하면서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합니다.

- (7) 장애인이 능동적으로 삶을 수행하는 모습과 스스로 자신의 관점을 말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장애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에 좌절하는 장애인 보다는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가며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꿈을 말하는 인물들을 많이 묘사합니다. 집단공동체에서 의사소통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장애인을 보여줍니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과 그의 장애 상태에 대해서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 부위나 장애 상태를 보도제목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애 보조도구나 장애 부위를 부각하는 언어표현보다는 장애인을 사람으로서 자존감과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표현을 사용합니다.
- (2) 장애를 언급함에 있어 장애의 정도나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점을 선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책장 한 장 넘기기도 힘들만큼 불편한 몸’, ‘제 한 몸 가누기조차 힘든 장애인’ 등의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 (3)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이 꼴로 내가’ 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능력을 부각시키면서 표현합니다. BBC 가이드라인에서는 ‘휠체어에 의지(Confined to a wheelchair)’하는 사람이라는 표현 대신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쓰면 좋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해서 이동하

는, ‘클러치를 이용하여 걷는’ 등과 같이 능력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보장기구를 조정하고 사용하는 주체이지 보장기구가 장애인을 이끌고 가는 주체가 아니므로, 장애인의 의지와 인격을 존중하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전동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혹은 ‘의족과 특수신발에 의지한 채’ 라는 언어표현은 장애인을 도구에 의지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표현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애인의 관점에서는 스스로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스스로 의족과 특수신발을 신고 걸어 다니는 주체이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보장도구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가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이러한 언어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4)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대사와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즐기는 드라마에서 방송이 장애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언어표현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자란 것’, ‘재수 없는 것’, ‘병신’ 등의 언어표현은 장애인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언어표현입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능력을 인정하고 자아존중감과 상호 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표현을 개발합니다.

사례 1 양익준씨 검사 임용 보도에서 나타난 보도태도의 차이

양익준씨가 사법연수원(39기)을 수료하고 신입 검사 임용이 되자, 동아일보는 ‘휠체어를 탄 검사 1호’(2010.1.30), 연합뉴스는 ‘하반신마비 딛고 검사된 양익준씨’(2010.1.30)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양사가 모두 장애가 부각되는 제목이었으나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동아일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의 전신이미지를 중거리 샷으로 잡은 사진을 게재하였으나 연합뉴스는 그의 명함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내용에서도 동아일보는 불편한 몸으로도 장애를 딛고 휠체어를 탄 검사 1호가 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양익준씨의 능력보다는 하반신 마비를 극복한 장애인이라는 점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연합뉴스는 하반신 마비가 된 경

위와 고시공부에 전념해 검사가 된 자신감을 기술해 양익준씨의 능력과 자신감에 초점을 둔 보도이어서, 양사의 보도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볼 수 있다.

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100130/25803287/1>참조

연합뉴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98327> 참조

사례 2 보장도구 등을 이용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언어표현들

“전동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이 여학생이……” (SBS 뉴스와 생활 경제, 2010.8.11), “왼쪽다리는 의족에, 오른쪽 다리는 특수 신발에 의지해야 하지만……” (SBS 8시뉴스, 2009.12.22)

사례 3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대사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인간아, 저런 사람 왜 밖에 나오게 하는 거야”라는 대사(SBS 우리 집에 왜 왔니, 2008) 마찬가지로 지적장애여성에 대해서 “모자란 거, 재수 없는 거, 병신”이라는 대사(SBS 온에어, 2008)

2) “장애를 극복하고 불굴의 의지로” 고정관념

미디어에는 무엇인가 큰 성취를 이루거나 선행을 한 장애인 등을 담은 장애인 미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직업적 성공을 할 수 없듯이, 모든 장애인들이 성공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노출 빈도가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이라면 성공한 장애인을 부각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디어의 장애인 노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난히 성공한 장애인 영웅담만이 부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지 못한 평범한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성공한 장애인만 부각되었을 때, 사람들은 평범한 장애인을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 또한 장애를 사회구조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

안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극복해 나가야 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되도록 미담 위주가 아닌 다양한 장애인 캐릭터의 장애인상이 미디어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 미담을 담을 때에도 그의 노력과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가 ‘어떤 특정한 기능의 결여로 인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어떤 특정한 기능을 제외하곤 가능한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을 그릴 때 ‘장애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를 먼저 달고 시작하면 그의 개성과 고유성, 그의 장점, 그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문제에 직면하면서 좌절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요하거나, 기사의 시의성을 감안해 성공한 장애인을 담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예술적·학문적·업적·직업적 성취 등을 중심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성공한 장애인을 보도할 때 장애가 있는 부위나, 장애 기구를 장면화해야 한다는 고정관념과 집착을 단호하게 버립니다.
- (2) 성공한 장애인을 묘사할 때 그의 능력과 업적을 중심에 놓고 화면이 구성되어야 하며 인터뷰 역시 그래야 합니다.
- (3) 가능한 한 장애인 스스로가 말하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삶 자체에서 경험하는 그 사람의 생각, 다양성 그리고 능력이 묻어나는 영상표현을 보여줍니다.
- (4) 지금까지의 기존 화면구성과 취재관행을 철저히 비교·반성해 봄으로서, 창조적인 화면구성과 연출 장면의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스스로가 꿈꾸는 세계와 지향하고 있는 삶을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화면구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5) 제작진은 장애인과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좋은 화면을 구성합니다. 방송이나 신문가람 시간에 쫓겨 비장애인 관점에서 화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례 1 '성공'이 아닌 '장애' 부각시킨 사진

장애인 위해 머리 맞대 '성공한 장애인'들(조선일보, 2010.9.15) 은 장애인들이 열악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까라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 이승복 박사와 이상목 교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최근 신문사진은 장애 부위나 장애 기구에 대한 부각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은 두 사람의 휠체어를 모두 부각시키고 있다.

사례 2 검사 임관식 보도에서 양익준씨 보도 사진

2010년 2월 8일에 양익준씨 '신임검사 임관식'이 있었다. 이날 보도사진에서는 양익준씨의 신임검사가 된 기쁨과 앞으로 신임검사로서 그의 꿈과 포부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의 얼굴과 눈빛을 볼 수가 없었다.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반신마비였고, 휠체어를 탄 사람이 검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2010, 2.8)는 '하반신 마비 극복한 양익준 검사'라는 제목으로 휠체어가 강조된 그의 옆모습의 사진과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하반신 마비 딛고 검사가 된 양익준씨가 동료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사진캡션이 있다.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11841> 참조

이와 유사하게 뉴시스(2010.2.12) 보도에서는 '하반신 마비 이긴 검사' 양익준 "약자 보듬는 검사되겠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사진이 게재되었다. 양익준씨는 검사가 되기 전이나 검사가 되고 나서도 스스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스스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임관식에 임하고 있는 양익준씨의 스스로의 능력이나 그의 포부가 담긴 얼굴표정보다는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과 휠체어에 중점을 두어 마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의 들러리 같은 느낌을 준다.

*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

2&oid=003&aid=0003089847 참조

장애인 관련 사진들을 유심히 보면,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얼굴과 내면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기록이라기보다는 장애보장구와 장애상태를 증명하거나 유명인의 들러리 같은 인물로 묘사되는 사진들이 많다. 물론 장애인이 처한 현실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진은 사진 대상의 정신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고, 조금만 더 인권의식을 가지고 숙고한다면 ‘약자 아픔 보듬는 검사 되겠다’라는 제목으로 양익준 검사의 의지가 보이는 얼굴표정이나 그의 제스처를 담는 것이 현명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장애상태와 장애보장구에 집착하는 보도태도에서 과감히 벗어나 장애인의 정신적 가치와 그의 능력 그리고 활체어가 아닌 그의 얼굴과 제스처에 카메라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의 천진난만함, 장애인의 역경극복을 담은 영상에서 그의 장애를 한번 부각시킨 뒤 바로 이어서 천진난만한 얼굴, 영웅적 모습을 담는 등의 이미지 표현은 자제합니다. 특히 이때 장애인을 ‘불행한 희생자’,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2) 그가 다양한 삶과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방식, 그의 개성을 파악하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의 외면에서 드러나는 ‘장애’보다는 그의 내면에 초점을 두어 그립니다.
- (3) 성공한 장애인을 그릴 때 그가 이론 학문적 업적, 예술성,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성공을 이끄는 힘은 반드시 그의 꿈과 의지 그리고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주위사람들과의 사랑과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장애인으로 성공한 사람의 경우도 이 같은 사실에 근간해서 묘사합니다.

사례 성공한 장애인 ‘불굴의 인물로 신화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는 행운아다-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의 7가지 비밀’(2009. 2. 14)은 교통사고로 중증장애인이 된 이상목 교수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 업적과 계획, 꿈에 대한 것보다는 장애 극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시청자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다. 물론 이 보도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이 의도한 것이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장애인을 다룰 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 신화화시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신체는 못 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비참하지만 의연하다’ 등의 동정어린 시각을 유도하는 감성적 표현은 피합니다.
- (2) 장애를 선정적이고 편향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불편한’, ‘불구의 몸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괴로운’, ‘고통을 받는’, ‘희생자’ 등의 표현은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차별화하는 인상을 줍니다.
- (3) 비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를 할 경우, 보도기사나 내러티브가 성공담이나 극기나 초월적인 존재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상투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그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좌절과 극기 그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합니다.
- (4) 장애인을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자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장애인과 비교해서 자신의 장애가 없음을 ‘다행이다’라거나 ‘행복이다’라고 느낀다는 등의 언급은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 방송에서 장애인이 등장하거나 장애를 소재로 이야기를 이끌어갈 때에는 장애인을 슈퍼맨이나 기적을 이룬 사람으로 신화화하여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례 장애인을 보면서 행복을 실감하는 비장애인

“이날 봉사 도우미로 참가한 현대차 직원가족 김○○(45. 과장 부인)씨는 ‘부족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감사하게 됐다.’고 말한다. 1004명과 1대 1 ‘아름다운 동행’ 나들이(조선일보, 2007.4.18)

이 같은 보도는 마치 장애인의 장애가 비장애인의 행복을 자각하게 하는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식시키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며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삶의 실존이다. 장애인은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인 것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이다. 단순히 신체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행복과 불행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보도내용은 삼가는 것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고, 행복과 불행의 단순논리도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다.

3) “잘 알지도 못하면서” 상상의 고정관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보도에 장애인이 나올 때에는 해당 장애의 특징과 생활상 등을 취재한 뒤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게 묘사해야 한다. 드라마와 개그 등 픽션 소재로 장애인이 등장할 때에는 의학과 복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제 해당 장애인을 취재하는 등의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묘사해야 한다. 장애 상태와 그를 둘러싼 장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전개가 가능하며, 잘못된 설정은 리얼리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애인을 짐스런 존재로 인식시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다큐멘터리나 보도에서도 취재 대상자의 장애 상태와 그들의 삶을 충분히 파악한 뒤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해야만 왜곡된 장애를 그리지 않게 되며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의 장애 특징을 정확하게 취재하여 최대한 사실에 근접하게 묘사함

다. 창조적인 화면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진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장애인과 장애 유형에 대한 정확한 사전인식입니다.

- (2) 극중 장애인의 장애유형, 경제력, 직업, 가정형편 등을 고려한 소품을 연출합니다.
- (3) 장애유형에 따른 보조기구는 신체 일부나 다름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용법이나 대하는 태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설정하고 연출합니다.

사례 MBC 드라마 '주홍글씨' 휠체어 논란

MBC 드라마 '주홍글씨'(2010)에서 극중 장애남성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가정이지만 저가의 수동휠체어를 사용한다. 일반 드라마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장애인은 고가의 좋은 휠체어를 탈 것이다. 장애인의 휠체어도 몇백 ~ 몇천만원 짜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애유형에 맞게 소소한 환경에 신경을 써야 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는 집이 나오는데 대문부터 계단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매번 누군가에게 업혀서 집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러므로 설정이 필요하다면 그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자문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비장애인 관점에서 미리 단정 짓고 어렵고 힘든 장애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 (2)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장애와 사회적 생활을 당당하게 말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 (3) 어떤 상황이든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판단하는가를 적극 표현하는 인물로 그립니다.

- (4) 장애인이 현실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다양한 성격과 품성을 발현하는 주체로서 리얼리티를 살립니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이 직접 표현하는 체험이나 경험과 같은 언어표현에 귀 기울입니다.
- (2) 편견으로 가득 찬 상상으로 부적절한 대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3) 장애상태와 장애로 인한 생활경험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례 MBC 누구세요?(2008)-양지숙 (조연)

양지숙은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로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인물이다.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장면이 있다. “너 없으면 학교 못 다닌다. 인문대 화장실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단다. 그럼 반지를 말지 나도 알바 무엇이든 할 거야/ 재 없으면 식판 못 받아서 나 밥도 못 먹잖아. 장애인을 아예 반지를 말든가 강의실 문도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휠체어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 화장실은 어텐데 내가 대걸레랑 빨강 바케츠 있는 데서 볼일을 봐야겠냐?/ 휠체어 고장 나면 새로 사야지 뭐 제 엉망이야 파는데는 있어도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등골 빠지게.”

이 대사들에서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이 형편없고, 제도적인 장치도 터무니없다는 상황을 친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에 기반을 둔 언어를 통해 전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4) “장애를 고쳐라”는 고정관념

장애는 질병이 아니다. 장애는 재활을 통해서 불편함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으나 완치나 극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간혹 장애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디어 제작자가 장애가 기적적으로 완치되거나 재활로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이 장애에 대

한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장애와 관련된 치료, 재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제공해야 하며, 검증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를 질병처럼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특수 치료를 받아 기적적으로 호전된 장애인이 있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다수 장애인의 경우 특수치료를 받거나 기적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지 말고 사회적 제도로 대중적 치료가 가능한지 등의 한계를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여, 노력으로 완치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대중들은 그렇지 못한 대다수 장애인을 스스로의 장애를 극기로서 극복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기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장애를 제도적인 재활제도 속에서 풀어갈 문제로 보지 않고, 장애인 개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극중 장애가 수술이나 기적, 혹은 재활을 통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설정은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픽션에서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간혹 기적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장애와 관련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혼동을 겪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2) 자폐와 지적장애 아동의 특기 교육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도 자칫 ‘장애는 극복하는 것’이란 인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례 03 MBC 드라마 '불새'의 기적은 불가능

MBC '불새'(2004)에서 하반신 장애 여성이 가벼운 전기 감전 후 감각이 되살아나 몇 차례의 재활치료 끝에 벌떡 일어서는 장면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경기도 부천시 순천향대학부속병원 재활의학과 석 현 교수는 기사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 전기 자극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전기 자극 자체로 감각을 회복시킨다는 보고는 없다... 척추 손상에 의한 하지마비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 상 불완전 손상이면 보행을 포함한 감각 및 운동기능의 회복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한순간의 자극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휠체어에 의존하는 생활만 하다 갑작스럽게 회복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인기 드라마에서 이 같은 장면을 내보내 행여 환자들이 과장된 희망을 품고 헛된 치료를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반전을 위해 장애인물이 완전히 완치된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수 있지만, 대중문화에서 드라마의 막강한 영향력을 볼 때,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서 인물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극적 장면을 위해서 장애를 가진 인물이 장애를 치료 또는 극복한 뒤에 갑자기 정반대의 성격으로 변화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을 때는 ‘학대받고, 애인에게 배신당하는’ 혹은 우울증과 의부증 있는 모든 분열적 행동을 하는 캐릭터였다가, 비장애인이 된 후에는 신경증적인 증세가 모두 사라지고 사회활동을 능동적으로 주체로 그려집니다. 이와 같이 캐릭터는 장애를 기적과 같은 완치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 (2) 가능한 한 장애 유무를 떠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성격변화를 묘사합니다.

사례 ☞ 무서운 장애인 캐릭터

‘그 여자가 무서워’(SBS, 2008)에서 영림(안면장애)은 안면장애를 수술해 주는 조건으로 대리모를 자처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수술 후 안면장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장애인이 되어 자신을 배신한 애인에게 복수극을 전개한다. ‘아내와 여자’(2009, KBS)에서 장종미(지체장애)는 재활치료를 받고 장애를 극복한 인물로 나온다. 장애를 가졌을 때는 의부증, 우울증 등 매사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장애를 극복한 후반부에 외서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변화한다. 이 경우, 장애를 기적과 같이 완치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견고한 편견을 역설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를 앓고 있는 000씨’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000씨’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장애인을 지칭할 때, 질병을 포함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뇌손상환자’, ‘뇌졸중장애’ 등으로 표현할 경우, 장애인과 장애를 환자와 질병으로 오인하게 합니다.
- (3) 장애인 또는 장애문제를 취재할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기반으로 한 장애 관련 용어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별첨 <표 1> 참조)

사례 ☞ 지적장애가 질병으로 표현

“청주에서 여중생 3명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또래 학생을 성적으로...”[KBS 뉴스9, 2010.8.3]

5) “장애인이 특별한 능력도 없어”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는 미디어로 인해서 특정 유형의 장애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은 예언자나 천리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거나,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은 한 영역에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 즉 서번트 신드롬, 혹은 범죄의 중심인물로, 청각 장애인은 소통불가, 고립, 범죄와 사건의 단서의 열쇠를 간직한 사람으로 흔히 등장한다.

이와 같이 장애 유형별 외형적 특성에서 신빙성 없이 유추한 드라마의 캐릭터 설정이나 신문의 소개기사는 무의식중에 모든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평범한 장애인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갖거나 무시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장애 유형에 따른 설정은 극적 흥미를 위한 설정, 또는 일부 제작진들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설정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파시키고, 캐릭터부터 장애를 부각하며 선입견을 형성하는 등 장애인의 차별을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다룰 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도식적인 장애인 묘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폐=천재’ 등과 같이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그릇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한 장애인을 무시하고, “왜 당신은 장애인인데 특별한 능력이 없냐!”며 무시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할 수 있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이 한 분야에 전문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적이고 신령스러운 영감을 지닌 소유자인 양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2) 신비하고 예언자적인 혹은 자폐적인 몰입을 표현하기 위해 장애인을 어두운

배경이나 고립된 위치로 카메라 앵글을 잡지 않습니다.

(3) 세상과 소통하면서 이웃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드라마에서 장애인이 등장할 때, 장애 유형의 외형적 특성에서 기인해 혼자 추측하여 캐릭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2) 장애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보도에서 장애인의 특정한 능력을 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청자나 독자는 인간적인 맥락에서 그가 가진 장애와 현실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고정관념에 기반을 두어서 장애인 인물묘사를 연출하지 말고, 장애인의 현실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진실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드라마 속 특별한 장애인 캐릭터

- * SBS 일지매(2008) - 시각장애인, 예언자
- * SBS 찬란한 유산(2009) - 자폐성장애인, 서번트 신드롬(천부적인 음악성, 피아노)
- * KBS 마왕(2007) - 시각장애인,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음, 비밀간직
- * SBS 신의 저울(2008) - 지적장애인, 충동적이고, 무의식적 범죄의 피의자.
- * KBS 남자이야기(2009) - 자폐성장애인, 서번트 신드롬(숫자와 주식 천재)
- * MBC 하얀 거짓말(2009) - 자폐성장애인, 서번트 신드롬(그림 천재)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한 가지 영역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언어표현, 청각장애인의 고립되고 범죄나 사건의 비밀을 간직한 음산한 언어표현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신비한 예언자로 묘사하는 언어표현들은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 수 있습니다. 해

당 장애에 대해 충분히 취재하고,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과 만남 속에서 일반화된 실존적인 언어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청순가련, 순종, 비련의 여성장애인” 고정관념

일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대부분 드라마에서 여성장애인이 등장할 경우, ‘아름답고 착한 품성을 지녔으며 가족이나 특히 남성에게 매우 순종적인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장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평범한 여성장애인의 삶을 더욱 소외시키게 된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여성장애인을 불필요하게 초조하거나 우울함 그리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2) 여성장애인이 도피하고 싶어 하거나 숨어살고 싶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는 여성의 수치심과 자존감 상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례 ≡ 청순가련, 순종, 비련의 여성장애인

- * 남자에게 너무도 의존적인 시각장애인 - 슬픈연가 (MBC, 2005)
- * 불쌍하게 눈물지며 남자에게 동정 받으려는 지체장애인 - 불새 (MBC, 2005)
- * 남편에게 순종하며 기다리는 뇌병변장애인 - 추노 (KBS, 2010)
- *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외출 시에도 주변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만 받는 안면장애인 - 그 여자가 무서워 (SBS, 2007)

이 드라마들에서 나온 여성장애인은 자립적인 생활이 없고 늘 가족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다. 안면장애를 가진 여성이 늘 불안, 초조하고 타인의 시선을 피하는 두려운 눈빛과 수동적

인 여성으로 고정시키는 장면면출은 장애가 수치스럽고, 자존감을 온통 상실한 여성으로 보일 수 있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여성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중심인물 이라기보다는 주위에서 도와주는 남편, 가족이 중심인물이 되어버리는 식의 전도된 캐릭터 묘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2) 여성장애인은 오로지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아내, 엄마, 누나, 언니 등 가족관계를 맺고 있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 ‘기현씨 빛을 보다.’ 인간극장(2008.12.29-1009.1.1)

기현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남편을 도움을 받으며 일을 수행한다. 장애인의 경우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이 스스로 하는 모습보다는 도와주는 남편의 노력과 수고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현씨가 빛을 보는 것은 남편의 절대적인 도움도 중요하겠지만 기현씨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삶의 빛이기 때문이다.

사례 ☞ ‘집지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성장애인 세희’

‘변호사들’(MBC, 2005년) 드라마에서 휠체어 타는 여성(세희)은 5년 전 사고로 부모님과 동생을 잃고 자신도 다쳐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자신이 운전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맘 놓고 슬퍼하지 못하고 모든 짐을 떠맡은 언니 주희에게 늘 미안해하면서 죄인처럼 살아간다. 사고 후 가세가 기울어서 언니가 힘겹게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반신 장애라는 이유로 공부도 안하고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언니를 도와서 집안일을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그저 하는 일이라곤 낮에 집을 지키며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죄인처럼 살면서 무기력한 여성장애인으로 묘사된다.

세희는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내내 자책하는데 그렇다면 가세가 기울어져 언니가 힘겹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에서 비록 휠체어를 타더라도 공부를 한다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모습이나 언니를 도우려는 모습이 나왔어야 시청자들에게 더 수긍이 가지 않았을까?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그리지 않습니다. 여성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획일적으로 여성장애인을 ‘보호의 대상’, ‘불쌍하고 부담스러운 존재’, 또는 ‘매우 순종적이어야 마땅한 존재’ 등으로 그리지 않도록 합니다.

사례 이 부부의 육아일기 5부(KBS 인간극장, 2010.4.19.-4.23.)

주인공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이고, 항상 집에서 가사일과 아이 돌보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전형적으로 순종적이면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2. 장애인의 인권 존중하기

인간은 누구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종교, 인종, 신분, 장애를 떠나서 인권의 주체로 차별받지 않고 법 앞에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듯이 인권이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1998년 채택된 장애인인권헌장에도 “장애인은 인간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뿌리 깊게 생활화되어 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언론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

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인권수준은 선진 외국에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 존재가 평등하게 가져야만 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1) 장애인 비하하지 않기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장애 차별적 언어는 수용자에게 무의식중에 차별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편견을 강화시킨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이라고 몇 년이 넘도록 장애인언론모니터 단체에서 지적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반대개념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대중매체가 허다하다. 이 밖에도 ‘신체는 못 쓰지만, 정신만은 멀쩡하다’, ‘장애를 입어도 밝게 산다’, ‘비참하지만 의연하다’라는 식의 장애를 부각하고, 동정어린 시각을 유도하는 감성적 표현과 ‘사지 멀쩡한데...’와 같은 ‘장애인의 특성’을 빗대어 부정적 비교나 상대의 열등을 드러내는 상투적 표현들도 너무나 많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란 오래된 사회의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 찬 언어사용과 비하적인 언어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하용어나 언어사용이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독화살 같은 것으로, 언론이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장애인 비하 언어표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각별히 언어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고자 하는 미디어 제작자는 없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간혹 ‘장애인 비하’라는 지적을 받게 될 때, 제작진 입장에서는 일면 이해를 하면서도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제작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바

꿔야 한다. 우리는 오래된 언어의 습관 속에서 갇혀 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일상적으로 생활화되어 있다. 언론이 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 당사자 입장을 항상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사례 '장애인 비하'로 비판받은 톱 장애 소재로 한 개그 코너

KBS '개그콘서트'(2006년, 9. 24일)의 '버전뉴스' 코너에서 톱 장애인을 톱 장애를 소재로 다루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방송에서는 2분 넘게 출연진 4명 모두가 톱 장애 증상을 흉내내면서 웃음을 유발시켰다. 이 방송 후 톱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당시 KBS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제작진은 사람들의 버릇을 흉내내고자 한 것이었는데, "버릇과 장애와 관련해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개그의 소재로 장애가 사용될 때에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디까지가 비하이고 어디까지가 개그인지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 다만 내 가족이 해당 장애인이라면 그래도 마냥 웃을 수 있을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작진이 심사숙고하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장애인을 비하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소재는 아무리 웃음과 해학 풍자가 있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언어표현'이나 '말'이 차별을 심화시키지 않는지 주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 용어가 일상생활은 물론 신문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무수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회와 언론이라면,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언어표현'이나 '말'에 신중을 기해 인권을 존중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인간은 언어표현이나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장애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비유하는 사회의 언어시스템에서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상처와 고통, 수치심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영국의 BBC 가이드라인을 보면, 장애인 스태프에게 스토리, 어조, 언어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언어와 용어 사용의 적절함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어인식과 의미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각별히 ‘언어표현’과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만약 취재 시 무심코 차별용어나 어조가 담겨 있다면 편집할 때 과감하게 삭제해야만 합니다.

(2) 프로그램 타이틀, 자막, 장애인을 소개할 때도 비하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네 손가락을 가진 피아니스트 히야’ 혹은 ‘기적의 외다리 비보이’, ‘엄지 공주’, ‘돌덩어리 시인’, ‘펜더 소년’, ‘외팔댄서’. ‘기적의 외팔이’, ‘코끼리 아저씨’ 등으로 장애를 부각시킨 프로그램 타이틀은 장애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극복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장애만을 부각시키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권은 장애인이 숨기고 싶거나 비밀로 하고 싶은 사실을 함부로 드러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로그램이 나간 뒤 외팔이, 코끼리 등으로 일종의 별명이 되어 해당 장애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명을 개발하고, 자막이나 장애인을 소개할 때도 예를 들어 ‘춤추는 홍길동’ 등으로 긍정적으로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재의 정당성,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와 개그의 흥내간의 관계의 당위성 등을 점검합니다.

(4) 어떤 것이 비하용어인지 인지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습니다.(<표 1> 참조) 다만 사극에서 장애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극의 시대상을 고려한 리얼리티를 살려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귀머거리, 맹인, 봉사 등의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막으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현 시점에서 통용되는 장애유형으로 반드시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용어가 확산되지 않으며 장애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표 2> 장애 분류와 정확한 명칭)

〈표 1〉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와 올바른 표현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얕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찔뚝발이, 찔뚝이, 찔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병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꼼추, 꼼추, 꼼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 천치, 얼간이, 땡,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언청이, 언청새님, 께보	언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흑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표 2〉 장애 분류와 정확한 명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척추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직장, 대장, 소장이나 방광자율신경 등의 손상으로 인한 배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 (5)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눠 장애급수를 표시한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차별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반인권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장애유형은 표기하되 장애등급은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숙선수범하여 수행하기를 권합니다.
- (6)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낱양스를 담아 은연중에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속담을 사용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 부정적인 비유들

- * 세계일보(2010.08.06) -“유치원에 가면 꿀 먹는 벌여리가 되요.”
- * 조선일보(2009.11.04) -“...성공하는 사람들의 소통 기술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타입
- * 중앙일보(2010.08.19) -‘영터리 내비게이션 A/S 센터 행태, 소비자 눈뜨장님?’
- * 연합뉴스(2010.06.14) -월덱 메시·호날두 “부부젤라, 시끄러워 못 살겠다”

아르헨티나의 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는 나이지리아와의 첫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들을 수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 한겨레신문(2010.03.01) -[박노자칼럼] 포로 신세의 대한민국 절름발이 경제를 만든 것이 잘한 일인지 필자는 잘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언론에서는 병어리 냉가슴, 꿀 먹은 병어리, 눈 뜬 장님,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 문고리 잡기 등의 속담을 흔히 사용한다. 이런 식의 묘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할 수 있으므로 언론에서 사용하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 ‘절름발이 행정’, ‘반신불구 경제’ 등의 부정적인 언어표현으로 장애를 빗대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언어표현이나 비유들은 인권의식이 전혀 없거나 정상인 對(대) 비정상인(병신)이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팽배해 있던 근대역사 시기에 고착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표현을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고양된 동시대에 계속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에 대한 성찰 없는 언론의 보도태도라 할 수 있다. 타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식이 성숙한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표현들이나 비유들은 언론 스스로가 먼저 근절해 나가야 한다.

- (6) 소아마비들, 뇌성마비들과 같이 장애의 질환의 명칭을 장애인과 동일시해서 호칭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7) 장애인을 문제 집단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이미지와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건, 사고보도에서 장애인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경우, 그 사람에게 있는 장애가 해당사건 및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특정한 장애를 해당 사건 및 사고의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짓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컨대 “이번 방화는 정신지체장애인의 행위로 추정됩니다.” 등의 표현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8) 반드시 장애인임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장애인과 똑같은 형식, 그의 직업이나 직장명, 직책 등을 언급하거나 사는 지역을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진행자는 물론 자막에서도 ‘청각 장애인 홍길동’과 같은

형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장애 상태를 꼭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그의 장애유형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특별히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등급까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별첨 <표 2> 참조)

2) 장애를 비장애인 미담을 위한 소도구로 여기지 않기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내용, 장애인이 장애가 더 심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등의 일종의 미담성 기사이다. 장애인 복지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에게는 시혜적 도움보다는 장애인 차별 상황 개선을 위한 사회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및 정치의 홍보를 위해 장애인을 소품처럼 다룬 이미지는 절대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 최근 기업들은 기업이미지를 재고를 위하여, 직원들의 화합과 봉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차별 사안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보도, 탐사보도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하고, 기업홍보성 장애인 대상 봉사는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많은 기업들의 봉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론은 이에 앞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발로 뛰는 기사’를 찾아 나서야 한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카메라는 봉사하는 자, 선행을 베푸는 자에 초점을 두면서 장애인을 마치 소품처럼 다루는 이미지는 반드시 개선합니다.
- (2) 비장애인은 항상 ‘헌신하는 사람들’, 장애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집단적 편견을 전파하는 이미지는 금물입니다.

- (3) 비장애인이 끌어주는 휠체어 클로즈업, 장애인의 밝고 천진한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비장애인의 경우 항상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고정 관념을, 장애인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시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고정 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 (4) 장애인 고용에 대한 보도도 전반적인 고용 제도에 대한 보도라기보다는 기업 체 홍보에 방점이 찍혀 있고, 사회 미담적인 시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한 보도도 행사를 홍보하는 내용이거나 미담을 전하는 수준일 뿐, 장애인의 교육 권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시혜적 보도, 단편적인 홍보성 보도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 장애인 교육 등 그 문제 자체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춰 표현합니다.

사례 18 '장애인의 날' 감성을 자극하는 대통령의 눈물만 집중 부각'

2009년 '장애인의 날' 관련 기사 중 가장 많이 실렸던 기사는 홀트 장애아동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합창단 노래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이었다. 똑같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악어의 눈물이다.', 혹은 '울어버린 대통령...' 등 각 언론사의 관점은 달랐지만, 대부분 감성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회적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정치인의 감성적 행위에만 지나치게 지면을 할애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외면한 것은 문제이다. '장애인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장애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개선에 대한 보도보다는 일회성 기부행사 보도나 시혜적 관점의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 장애인 캐릭터 연출 이렇게 합니다.

- (1) 장애인을 바보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폄하하여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극중 캐릭터간의 관계설정이 장애인=열등함/ 비장애인=우월함 등으로 묘사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2)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에티켓을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만 비장애인이 도와주고, 항상 도움만 바라는 인물인양 묘사하지 않습니다.
- (3)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하는 인물로 묘사합니다. 가령 휠체어를 스스로 움직이거나, 밥 먹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 언어표현 이렇게 합니다.

비장애인의 선행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들은 선행을 하는 비장애인을 천사처럼 부각시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감성을 자극하는 언어표현을 통해서 장애인을 더욱 비참하게 표현하는 인권침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을 차별적인 존재,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비장애인의 선행 강조 보도는 자제합니다.

3)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 지키기

장애인이 언론에 노출될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촬영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영상이나 기사에 게재되는 사진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 감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장애 부위를 부각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 장애인 인권 침해적인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우리 언론은 흔히 시청자와 독자의 알권리만을 존중하면서 장애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기타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서 비교적 둔감하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입장은 어떨까? 전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반라나 전라를 드러내며 힘겨워하는 모습이 노출되었을 때, 장애인 당사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언론인들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작진은 장애인권 및 인격을 존중하려는 철저한 인식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몸이 불편한 것은 실존적인 것이며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 도움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지, 특별히 가시적으로 시각화하여 강조되고 반복될 문제가 아니다. 가령 긴 계단을 보여주면서 장애인이 누군가에 업혀 가는 장면을 길게 보여주거나 한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업히는 장면, 먹여주는 장면, 기어다니는 장면, 옷 갈아입히는 장면, 목욕하는 장면 등등은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인권의식에 초점을 둔다면 이러한 장면은 아예 없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외국의 경우, 장애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철저한 인식하에 그와 같은 장면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묘사하지도 연출하지도 않는다. 설령 묘사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옷 벗기고 목욕시킨 다음 옷 갈아입히는 장면까지 온통 보여주지 않고, 목욕하러 들어가는 장면만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기어다니는 장면이나 먹이는 장면이나 업혀 다니는 장면도 그다지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이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그들의 초상권을 무시하고 함부로 취재하거나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 원치 않는 내용과 모습을 부각시키거나,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권적인 행위이다. 특히 미디어가 장애인을 이렇게 비장애인 잣대로 무성의하게 반인권적으로 담는다면, 그것은 폭력이나 마찬가지로 가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언론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1.27.제정) 제5조 제1항은 “언론은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되면서 ‘인격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등도 인격권의 한 종류로서 명시했다. 그러므로 언론은 장애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성인 장애인뿐 아니라 특히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초상권도 똑같이 보호합니다. 사적 영역을 동의 없이 취재하거나 숨기고 싶은 사적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그의 현재와 장래의 삶을 위하여 초상권 또는 음성권을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와 승낙을 받고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장애인 감정이 수치스러워하거나 창피해 하는 동작과 같은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장애인 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상처와 모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편집합니다.
- (3) 장애인의 고통과 절망을 과장하여 동정을 받을 존재로 설정해 놓고 장애인의 이미지나 음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4) 장애인이 품고 있는 내적인 감정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때, 동작, 표정, 소리 등의 표현이 적절해야 합니다.
- (5) 자료화면이 등장할 경우에는 기사내용과 관련 있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취재화면이 아닌 자료화면이라는 점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칫 부적절한 자료화면이 기사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 (6) 장애로 인한 불편이나 장애 부위를 강조하기 위해 목욕장면이나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은 맥락상 필요하다 해도 이미지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7) 성별이 다른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히는 장면은 장애인의 성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절대로 이미지화하지 않습니다.

4)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성폭력 보도에 보다 신중하기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생애과정 속에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거나 주장하지 못한 채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는 데다, 사회로부터 ‘비생산적인 존재’라는 낙인(Stigma)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통제형태를 의미한다. 여성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 육체’의 기준에서 미달된 그야말로 여성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여성답지 않고 여성의 역할을 잘하지도 못하며, 어린이 같은 존재로 가치절하되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과 장애 차별의 이중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장애인은 대체로 고립되기 쉽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와 성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 여성장애인 보도 이렇게 합니다.

- (1)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고유한 역할, 즉 출산, 육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여성장애인을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을 조명해야 합니다.
- (3)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과 관련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관련된 가족상담 및 산전·산후 지원서비스, 자녀양육과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제도 확대, 여성장애인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등이 보장되도록 지원제도 및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 (4) 여성장애인을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장애인으로만 보고,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묘사하는 것이 부족하니 어머니로서, 누나로서, 상사로서, 친구로서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묘사합니다.
- (5) 여성장애인이 성폭행을 당한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보여준다면 성폭행 상황을 반복해서 가시화하지 않습니다. 재연도 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지라도 여성장애인의 심리적인 충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례 도움을 받고 있는 장애인도 부끄러운 장면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

2006년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성미의 은행나무’에서 서지도 걷지도 못해 배를 이용하여 밀어서 이동하는 13세 여자 장애 아동에 대해 다룬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해 혼자 집에서 숙제로 가정학습을 하는 그녀를 그리면서 얼굴 쪽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위에서 탑 앵글로 엮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녀가 침대에 손을 대어 힘들게 버티고 서 있는 모습도 엉덩이 쪽에서 화면을 잡았다. 할머니가 양동으로 소변을 치우는 모습도 그대로 나왔다. 방송에서는 “그래도 13세 숙녀에겐 언제나 창피한 순간이다”라는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때 침대에 팔위로 얼굴을 파묻고 창피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비춰진다. 그녀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부끄러워 침대 구석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우는 장면조차도 엉덩이 부분을 부각한 화면구성이었다.

- (6) 여성 장애인 전문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의 설치, 운영 및 확대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의 설치 운영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들을 조명합니다.
- (7) 성폭력 사건 등을 다룰 때에는 전문상담소 관련단체와 지역사회서비스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성폭력 문제만이 아닌 제도적인 개선

에 대한 제시를 꼭 합니다.

- (8)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 스스로 주체의식을 기르고 인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를 합니다.

3.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1)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미디어 제작자는 장애인을 자신의 삶과 꿈을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그 자체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했지만 그 표현 방식이 약간 세련되게 변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그릴 때 신체적 결함이나 사회활동의 제한 등을 부각하여 장애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불굴의 의지라는 표현을 쓰며 초월적 존재로 묘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을 한계적 존재 아니면 초월적 존재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꿈과 소망을 추구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장애인들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신체적인 장애만을 부각시키고 장애인의 내면의 욕구와 사고 등을 무시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을 현실생활에서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부터 장애인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언론은 장애인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인권을 가진 인간 그 자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론인은 장애가 ‘결함’이 아니라 ‘다름’이나 ‘개성’으로 보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만 언론은 장애인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개성 등을 충실히 묘사하는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스스로가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노력과 내면의 진실이 묻어나는 영상이미지를 밀도있게 제작할 수 있다.

■ 장애인 영상표현 이렇게 합니다.

- (1) 드라마에 장애인이 등장할 때,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고 단절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드라마의 이미지나 메시지는 많은 시청자의 가치관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드라마 속 장애인 캐릭터가 좀 더 당당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그려지고, 사회관계에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로 그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 (2) 장애인은 외부와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거나 사회와의 소통불가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은 장애인 개인 성격이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사회적 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 (3)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외톨이로 아무와도 소통하지 못하는 캐릭터로 연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장애인 묘사는 실제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극중 부득이하게 장애인을 가족에게 의존하여 무위도식하는 사람으로 그리거나, 경제적으로 이동이 어려워 은둔하는 상황으로 그려야 할 경우에도,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문제를 함께 조명해주어, 장애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선을 갖게 합니다.
- (4)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단독 출연보다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장애가 없는 친구들을 설정하여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일상의 시점에서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합니다.
- (5) 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조연이나 엑스트라에 장애인이 보다 많이 등장하도록 합니다. 가게 주인이나 마켓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 속에, 혹은 건물목이나 행인 중에서도 장애인을 연

출합니다. 아역 중에서도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나오게 하고, 다수의 어린이들이 등장할 때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을 그립니다.

- (6) 언론보도나 시사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전달할 때에도 그를 사회나 직업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생의 주관자로 그립니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장애인에게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내용은 지양합니다. 반대로 장애인 관점에서 그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면서도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시킵니다.
- (7) 보도나 다큐멘터리에서 장애인을 담을 때, 활동보조인과 함께 직장을 다니며 독립생활을 하는 모습이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평범한 생활에서 느끼는 모습들을 조명해줌으로써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닌 평범한 이웃이나 친구로 인식시켜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서 조명합니다.
- (8) 보도에서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배려를 강조하거나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지 주의합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직장동료로서 평등한 위치에서의 관계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9) 보도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묻는 질문 등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장애인은 직장생활에 부적합하고, 동료들에겐 부담스런 존재라는 선입견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애인 채용이나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0) 청각장애인이나 자폐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장생활을 소개할 때, 이들과 소통의 어려우니 이해하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며, 비장애인의 이해심과 배려심이 없이는 그들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 (11) 장애인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집안에서 홀로 무의도식하고 있는 존재로 그리지 않는지 주의합니다. 또 중증장애인을 일생동안 가족, 지인 등 맹

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를 함께 고민해서 보여줍니다.

2)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장애인은 사회적 열등생 혹은 결함의 존재가 아니다. 능력을 펼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사회 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록 사회적 약자이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명예, 특전 등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을 뿐, 현실에서의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기본권들로부터 소외된 채,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장애는 이 사회에서 결격사유로 인식되어 직업, 교육 등에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신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언론은 현대사회의 가치관과 인권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은 신체적 장애가 결코 사회적 장애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도 동등한 기본인권과 인격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론은 공공적·공익적 차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장애인의 기본인권과 인격권을 우선하여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묘사하기

장애인은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통 장애인은 사회와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인간관계 맺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은 외부와 단절(고립)되었거나 극단적으로 타인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비장애인의 잘못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와 접촉이 없고 사회적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생각이 먼저 앞선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조금만 살펴봐도 장애인은 사회나 직업 환경에서 비장애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인생의 주관자이며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미디어 제작자가 우리 사회의 주위환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장애인을 보다 현실적이고 역동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인간은 항상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소통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언론은 장애인이 고립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 그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왜곡되게 차별하는 관점이다. 이제는 동등한 인간의 관점에서 장애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상호 존중하기

장애인을 취재할 때는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사전에 물어봐야 하며, 영상표현에서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 자리를 양보해도 좋은지를 물어보고 장애인의 의견에 필요한 적절한 행동을 하는 이미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지 그렇지 않은지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편견부터 작용해서 도움을 받는 장면만 계속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소통하는 관계에서 모든 행위는 시작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버스에서 장애인에게 자리

를 양보할 때, 비장애인은 ‘도와줄까요’ 라든가 ‘자리를 양보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을 먼저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답에 따라 행동한다. 바로 그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주체임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첫 걸음이다.

5)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장애인의 문제나 차별은 잘못된 사회의 시선, 불평등한 제도나 정책 등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불러오는 사회적 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생동안 가족, 지인 등 맹목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삶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말 도움이 되려면,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 의존적인 삶’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이나 제도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진은 자신이 보고 들은 과거의 장애인 영상이나 기사에서 탈피해서 직접 취재 또는 촬영하여 장애인의 현실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 장애인의 삶이 극단적으로 비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각시켜서 동정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제도적 도움이 필요한지 사회적 해결책과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이 해야 할 책임이자 주된 역할이다. 대중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비참하고 동정적인 존재로 그려서 얻는 동정이나 일시적인 모금보다,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시스템 등의 확충을 촉구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과 인권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언론 본연의 책임이자 공적인 역할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례 ❸ 동정적 시혜만 강조하는 모금이나 솔루션 프로그램

희귀병이나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모금방송이나 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가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가정 형편, 장애로 인한 어려운 삶, 병으로 인한 고통, 장애 아동을 가진 가정의 어려움 등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애부위를 부각시키고, 동정을 유발하는 대사와 슬픈 음악 등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RS 기부로 장애인 가정을 도와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제작의도와 노력 자체는 매우 높이 평가되어야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인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동정적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동정적 시각으로 포장된 솔루션 프로그램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시혜적, 동정적인 것에 그치게 하며, 장애인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은 장애를 개인의 불행으로 고착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보다는 성금을 통한 일회성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도 장애 차별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솔루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도 충분히 인정한다. 앞으로 솔루션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적 지원시스템, 법제도 등을 유기적으로 담아내면서 현실적으로 장애인 지원에 대한 공공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장애인이 처한 상황은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에 한정된 특수한 측면이 각각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해당 장애인의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접근하지 말고, 그가 처한 장애에 대한 책임을 사회 전반이 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정신지체장애인과 같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도우미 제도 확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위한 후견인 제도 도입이나 지역 사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의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 장애인 시위보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다뤄주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직도 많은 언론은 시위로 인한 교통 혼잡 중심으로 보도하거나, 혼란이나 해프닝 정도로 부정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는 언론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제도적 접근 보다는 현상적 언론보도 사례

* 세계일보(2007.04.05) - 청와대서 봉변당한 노대통령

* 문화일보(2007.04.05) - ‘뺑 뚫린’ 대통령 경호

‘왜 장애인이 대통령 앞 기습시위를 해야 했는가’ 외면한 채, 경호문제에만 초점

2007년 4월 5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 공포되던 날, 이례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의 뉴스프로그램은 비중 있는 기사로 내보냈다. 그러나 장차법이 제정되기까지 관심도 없었던 주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해프닝(장애인 두 명이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교육법 개정에 관한 기습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앞 다투어 다루면서 이를 대통령의 경호체제에 대한 허술함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본말이 전도된 보도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구체적인 이슈와 시위의 이유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독자들은 시위의 이유조차 모른 채 장애인 시위는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인식만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장차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주류 사회를 일부 주류 신문이 대변한 것처럼 보여서 씁쓸하기도 했고,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우리나라 언론의 가치 지향점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되묻게 되는 기사였다.

7)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기.

‘장애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를 다루지 않고 늘 장애차별을 위한

발굴보도가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 언론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 주거, 건강, 고용기회 등 장애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복지관련 사항을 더 많이 다루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취재한 장기적인 기획보도를 하는 바람직하다.

사례 ☞ 장애인 인권향상에 긍정적인 사례

* 특종 놀라운 세상(MBC, 2009.8.25)/누구세요(MBC, 2008)

이 프로그램들에서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존재이자, 사회-제도적인 장치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승가원의 천사들' 2부(MBC 스페셜, 2010, 489회)

인상적인 다큐멘터리로, 반장선거에 나가 당당히 연설하는 장면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반장이 되려고 애쓰기도 하고 여자 친구를 사귀는 등 주인공의 인물묘사가 다양한 특성들로 묘사되고 있다

* 희망나눔 무지개 9회 (MBC)

청각장애인 주인공이 직장에서 비장애인 동료들에게 수화를 가르쳐 함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 태양사진기(MBC, 2007) 기하의 무예스승

이산(MBC, 2008)- 소양증(예능인), 안면장애(내시)

주로 사극에서는 장애 언급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소신껏 활약하는 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 감성다큐 미지수(KBS2, 2010.10.16)

10월 16일 방송된 KBS 2TV '감성다큐 미지수'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열여덟 고등학생 차승훈 군을 소개했다. 차승훈 군은 스스로를 '알바왕 차탁구'라 주장하면서 매일 하루 2시간씩 피자 상자를 접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김은실씨는 유치원 원장 시절 차승훈 군을 만났고, 오랜 신뢰관계는 그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차승훈 군의 여자친구, 일할 때 모습,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표현 등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04. 장애인 관련 방송 법률

1. 방송물접근 법령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
2. 내용물 규제 법령으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왜곡이나 장애인에 대한 비하 등을 금지할 수 있는 법령
3. 물리적인 접근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이 방송사에 접근하거나 방송에 출연할 때, 혹은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제작에 참여할 때 장애인의 접근을 명시한 법령
4. 정보, 환경접근 관련 법령으로 장애인이 방송사에 접근하거나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혹은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의사소통이나 방송프로그램을 웹을 통하여 시청하고자 할 때 근거가 되는 법령
5. 기타 법령으로 미진한 영역이나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를 정한 법

구 분	내 용	법 령
01. 방송물접근	방송물 시청지원 근거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02. 내용물을 규제	장애인 왜곡, 비하 등 금지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03. 물리적인 접근	장애인 방송사나 출연 등에 물리적인 접근환경 마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04. 정보·환경접근	장애인 방송사나 출연 등에 정보나 의사소통 접근환경 마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05. 기타 법령	기타 미진한 영역, 포괄적으로 장애인과 관련한 법령	방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01 방송물 접근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법 제69조 제8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프로그램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0조(장애인의 시청 지원) 영 제52조 제3호에서 “방송통신위원 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정책발표 등 국민적 관심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신청자의 정보접근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방송프로그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④ 「방송법」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 제76조의3, 제76조의5,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78조의2는 콘텐츠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국내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광고, 협찬고지, 프로그램의 공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재송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1.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해당 사업구역에서 특정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디지털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시청자 지원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 자막광고, 자막

방송 및 특별 프로그램의 제작 등 필요한 사항을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③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

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02 내용물 규제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 ②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를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03 물리적 접근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신시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나. 정보, 의사소통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

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할 것

04 정보 · 환경접근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 ·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 개발 · 생산 사업자: 해당 정보통신제품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2. 장애인 · 고령자 · 농어민 · 저소득자를 위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 해당 콘텐츠

츠의 내용 및 신청하는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의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지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05 기타 법령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인권보도준칙

■ 전문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언론은 이를 위해 인권 문제를 적극 발굴·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여론 형성에 앞장선다.

언론은 일상적 보도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아울러 ‘다름’과 ‘차이’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언론은 인권의 증진이 기본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민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 총강

1. 언론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이 실현되도록 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한다.
3. 언론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공동체 구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의 신장과 모든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쓴다.
4. 언론은 인권 사각지대의 인권 현안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앞장선다.
5.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6.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

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언론은 생명권 보장과 생명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살 보도에 신중을 기한다.
9. 언론은 인권 교육 매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다.
10. 언론은 오보 등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한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 주요 분야별 요강

제1장 민주주의와 인권

1.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표현을 자제한다.
 - 가. 권위적인 용어와 국민을 낮추보는 용어
 - 나. 사회 각 부문의 권력층을 지나치게 예우하는 용어
 - 다.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2.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편향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특정 정치인(집단)을 옹호하거나 비하하는 용어
 - 나. 노사관계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표현
 - 다.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한 표현
 - 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간 차별을 조장하는 용어

제2장 인격권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 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명 공개에 주의한다.
 - 라. 죽은 사람과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마. 자살 사건의 경우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권고기준을 준수한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가.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 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의 신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 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한다.
 - 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를 하지 않는다.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
 -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 나. '미망인' 등 잘못된 가부장적 표현
 -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
 -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는 표현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이주민이 한국문화에 동화흡수되도록 유도하거나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강요하는 미담 중심 보도를 자제한다.
 - 라. 이주민을 한국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평가해 구경거리로 만들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이주민에 대해 희박한 근거나 부정확한 추측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가.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에게 ‘범죄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울 수 있는 용어
 - 나. 이주노동자 등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전염병 원인 제공자 등으로 몰아갈 수 있는 표현
 - 다.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으로 삼거나 어눌한 한국어 표현 등에 주목한 웃음거리 묘사

제6장 노인 인권

1. 언론은 노인 문제를 제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
 - 가. 노인을 지나치게 의존적 존재로 부각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지 않는다.
 - 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 등을 개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사회적, 정책적 해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2. 언론은 노인의 독립과 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 존중한다.
 - 가. 연령을 이유로 노동시장 등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감시한다.
 - 나. 노인 인권 침해, 특히 시설 생활 노인 등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한다.
 - 다. 노인의 결혼과 이혼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제7장 아동 인권

1.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는 자세를 갖는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 중독 등을 다룰 때 어린이와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한다.
2. 언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한다.
 - 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선정적·폭력적 묘사를 자제한다.
 - 나. 주변의 도움이나 후원을 받는 경우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범죄 사건을 재연할 경우 아동을 출연시키지 않는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는다.
-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는 표현

2011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